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】

의안 번호	683
----------	-----

2022. 3. 22.
자치행정위원회

1. 제안경과

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이도재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(안 제1조 및 제2조)
-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3조 및 제4조)
-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및 홍보, 전문가 자문 등의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~제7조)
- 예산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8조 및 제9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- 본 조례안은 초고속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 사용환경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율이 30.2%

로서 성인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서,

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·추진을 정하였고,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규정한 조례로써 필요 타당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생략

5. 토론요지

○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붙임 :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1부.